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
----------	-----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1일

발의자 : 경수현, 정기혁, 정병기,
김경이, 강수진, 김육영,
양순임, 소형준, 정윤주,
이호건,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만을 규정하여 서면 회의 심사에 대한 지급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나.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구분하고, 서면 심의 등을 포함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존재함
- 다. 이에 서면 심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자 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라. 한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위원회

운영 실적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규정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참석 수당과 심사 수당을 규정함

(안 제18조제1항)

나. 조문의 자구 체계를 정비함

(안 제18조제2항, 제3항)

다. 의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9조제3항,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3. 8. 21. ~ 2023. 8.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협
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
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제1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제2호”를 “제2
항 제2호”로 한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 1항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5월 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취합한 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수당) ① <u>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u> 1. <u>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u> 2. <u>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u> <u><신 설></u>	제18조(수당) ① ----- <u>위원에게 -----</u> ----- <u>다음 각 호의 수당 -----</u>. <u><단서 삭제></u> 1. <u>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u> 2. <u>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u> ② <u>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u> 1. <u>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u>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

-----.

제19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5월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취합한 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